

토 론 회

<2017년 대선후보에게 바란다⑩>

# 대선공약과 대한민국의 미래

- | 일 시 | 2017년 4월24일(월) 오전 10시
-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순화동 소재)
-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 회 순 ————■

### 사 회

- 황 인 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 제 발 표

- 이 성 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 부회장)
-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중앙회장/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김영훈 (바른사회 경제실장)

### 질의·응답

### 폐 회





## ■————— 목 차 —————■

### 주 제 발 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더 규제해야 하는가?”

- 이 성 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시장 원칙을 준수하는 新정부의 가맹점 수수료율 정책을 기대”

- 서 지 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카드 수수료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 김 문 식 (한국주유소협회중앙회장)

“지급결제수단간 경쟁 촉진해야”

- 김 영 훈 (바른사회 경제실장)





<카드 수수료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 주제 발표



[주제발표]

## 카드 수수료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발표주제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더 규제해야 하는가?

2017년 4월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박사  
javanfish@kcmi.re.kr  
+82 10-3426-5850

본 발표는 발표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1. 검토 배경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2012년 7월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꾸준히 제기됨
  - 2017년 대선의 주요 후보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경제정책 공약의 하나로 내세움
- 가맹점수수료 규제가 도입되었음에도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는 이유는 세 가지 때문임
  - 원가에 근거한 가격규제 : 가격규제의 근거가 되는 원가에 대한 의견은 이해당사자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임의적인 차등규제 : 동일한 원가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수수료를 매출규모에 따라 가맹점을 영세, 중소, 일반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
  - 가격경쟁의 왜곡 : 양면성(two-sidedness)의 결과로 지급수단 선택과 수수료 경쟁이 왜곡되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함
- 본 발표는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규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올바른 규제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함께 논의하고자 함

## 2.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이해

### (1) 양면성이 존재하는 시장

- 신용카드시장은 차별금지규제(no-surcharge rule)로 가격구조(price structure)에 의해 시장 균형이 결정되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
  - 차별금지규제는 여전법 제19조 제1항 중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가 해당
  - 차별금지규제가 있는 경우 - 소비자는 지급결제 서비스의 총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원수수료에 의해 결제수단을 선택
  - 차별금지규제가 없는 경우 - 소비자는 지급결제 서비스의 총가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총가격에 의해 결제수단을 선택
- 신용카드시장의 양면성은 판매가격, 지급수단 선택, 가격경쟁의 왜곡을 가져옴
  - 판매가격의 왜곡 - 차별금지규제로 판매자(가맹점)의 판매가격에 가맹점수수료가 일부 포함되나, 이를 소비자는 알지 못함(현금결제 소비자가 불리하게 대우받는 결과 초래)
  - 지급수단 선택의 왜곡 - 소비자는 지급결제 수단의 비용 효율성과 무관하게 회원수수료가 낮은 지급결제 수단을 선택할 유인이 높음
  - 가격경쟁의 왜곡 - 차별금지규제로 회원수수료 경쟁은 과도하게, 가맹점수수료 경쟁은 하지 않음

## (2) 시장균형 특징

### — 균형 가맹점수수료

- 모든 판매자가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결정됨 (must-take card condition)
- 카드결제 의무수납은 여전법 제19조 제1항과 같이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시장균형으로도 달성

### — 균형 회원수수료

- 카드결제 수납조건(must-take card condition)을 만족하는 가맹점수수료가 주어진 가운데, 이윤극대화를 만족하는 가장 낮은 회원수수료를 결정

### — 비용과의 관계

$$f_B < c_B ; \quad f_S > c_S$$

### — 경쟁과의 관계

$$\frac{\partial f_B}{\partial n} < 0 ; \quad \frac{\partial f_S}{\partial n} > 0$$

## (3) 사회후생 극대화 조건

- 사회후생함수는 가맹점수수료가 아닌 회원수수료의 함수이며,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변수도 가맹점수수료가 아닌 회원수수료

$$f_B^* = c_B + c_S - b_S$$

## 3. 바람직한 신용카드시장 규제

### (1) 수수료 규제

#### — 회원수수료 규제

- 회원수수료를 사회 최적의 회원수수료로 규제할 경우 지급수단 선택 및 가격경쟁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음

$$f_B = f_B^*$$

- 회원수수료 규제는 카드사의 회원수수료에 대한 경쟁을 제한하게 되므로 카드사 이윤을 증대

#### — 가맹점수수료 규제

- 가맹점수수료( $f_S$ )를 원가( $c_S$ )에 근거하여 규제하면 카드사가 회원수수료( $f_B$ )를 사회 최적의 수준보다 높게 책정해 카드결제 서비스가 사회 최적의 수준보다 낮게 공급되는 부작용 초래 가능

- 동시 규제
  - 회원수수료는 사회 최적의 수준으로, 가맹점수수료는  $b_S$ 보다 크거나 같은 수준으로 규제
- ⇒ 양면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가맹점수수료보다는 회원수수료를 규제하는 것이 더 합리적

## (2) 의무수납규제 폐지

- 의무수납규제는 신용카드업 초창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성숙한 신용카드시장에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아님
- 현금보다 카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의무수납규제 폐지는 판매자의 가맹점수수료 협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
- 향후 현금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도래할 경우 의무수납규제는 자연스럽게 무의미한 규제가 될 것임
- ⇒ 의무수납규제가 폐지되더라도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해소되지 않을 것임

## (3) 차별금지규제 폐지

- 차별금지규제는 신용카드업 초창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성숙한 신용카드시장에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아님
- 차별금지규제가 폐지될 경우 판매자는 가맹점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전가시킬 수 있음
  - $f_S = b_S$ 이면, 모든 판매자는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를 차별하지 않음(가격의 경직성 때문이 아니라 가격차별의 유인이 없기 때문임)
- 신용카드시장은 회원수수료가 아닌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경쟁하는 시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맹점수수료를 반드시 규제할 필요가 없음
  - 매출규모에 따라 가맹점수수료를 역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는 유지될 필요가 있음
- 향후 현금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도래할 경우 차별금지규제는 사실상 불필요한 규제가 되나 폐지되지 않을 경우 시장 균형을 계속 왜곡
- ⇒ 차별금지규제를 폐지해 카드사간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경쟁 유인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 4. 시사점 및 정책제안

### (1) 신용카드시장 규제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

- 원가에 근거한 가맹점수수료 규제는 원가산정에 대한 이견이 항상 존재할 수 있고 동일한 원가에 대해 임의적으로 수수료를 차등하기 때문에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음
- 현행 가맹점수수료 규제에 대한 불만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규제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될 것임
- ⇒ 여전법 개정을 통해 차별금지규제를 최대한 빨리 폐지하고, 현행 가맹점수수료 규제도 2~3년 내에 폐지

### (2) 지급카드 결제시스템의 비용 효율화 추진

- 현행 지급카드 결제시스템의 비용 효율성과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여 현금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를 철저히 대비
- 간편결제 등 핀테크가 기존 지급카드 결제시스템을 자극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지급카드 결제시스템의 효율화 도모

Thank you!



<카드 수수료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 토론

## 시장원칙을 준수하는 신정부의 가맹점 수수료를 정책을 기대

서 지 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 부회장

新정부 출범을 앞두고, 카드업계의 오래된 과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과 관련한 카드사와 가맹점 업체간의 논쟁이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7월, '新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을 통해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에 한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적격비용 산정이라는 원칙이 무색할 정도로 정부의 일방적 수수료율 인하 방침이 나오면서, 카드사의 불멘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그런데,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의 공약 대부분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의 추가 인하가 포함되어 있어, 카드사들의 수익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드업의 경우 국내 소비자금융의 대표적 결제수단을 제공하면서, 도입 역사에 비해 급속한 성장을 이룬 산업이다. 정부의 세원 투명화와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순기능을 갖춘 금융산업중 하나이다. 은행업, 보험업 등이 최근 정부의 금리와 보험료를 자율화 조치로 인해 시장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반면, 카드업의 경우 여전히 가격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국내 현실이다. 정부의 가격결정과정에서의 개입은 과거 관치금융 시절의 전유물로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건전한 자율경쟁을 제고시키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카드시장 참여자인 카드사와 영세가맹점간의 갈등의 골만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미국, EU의 경우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수수료율 상한선 제도, 가맹점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 간소화, 소비자 권리조항 강화 등으로 시장가격결정과정상의 불공정을 통제한다. 시장 참여자들이 동의하는 시장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한해 엄하게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정부가 카드시장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직접 조정하는 것보다는 시장원칙의 설정 및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시장의 약자라고 인식되는 영세가맹점의 권익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보완에 주력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방향이라고 사료된다.

## 카드수수료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김 문 식**

한국주유소협회 중앙회장/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를 현황

가맹점 구분(연 매출액 기준)			수수료율
신 용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2억원	0.8%
		2~3억원	1.3%
	일반 가맹점 (평균 추정치)	3~5억원	약 1.85%
		5~10억원	약 1.92%
		10억원 초과	약 1.96%
수수료 상한			2.5%
체 크	영세가맹점	~2억원	0.5%
	중소가맹점	2~3억원	1.0%

\* 2015년 11월 금융위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 발표, 2016.1월부터 적용 중

□ 문제점

○ 우대 수수료율 내에서 카드사와 금융위가 수수료를 일방 결정

- 가맹점은 수수료 협상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의 조달금리 등 영업비용을 포함한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3년마다 카드사와 금융위가 결정하는 것이 모순

○ 여전법상 중소영세가맹점의 범위 제한

-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13은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를 영세가맹점, 2~3억원을 중소가맹점으로 규정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극히 제한적임.

\*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우 전체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5%이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매출은 전체의 14.2%에 불과

\* 카드사의 조달금리가 '12.6월말 3.83%에서 '15.6월말 2.10%로 1.73%p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14.2%에 해당하는 가맹점에만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금융 감독 당국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생색내기용 제도임

○ 체크카드의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 체크카드는 대손충당금, 채권회수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신용카드와 동일한 1.5%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함

\* 해외 주요국의 체크카드가맹점수수료율은 0.15~0.3%로 국내 평균인 1.53%의 10~20% 수준임

○ 뱅 수수료의 인하의 반영 미비

- 금융위는 2015년 11월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VAN 수수료 및 마케팅 비용 부담의 적정성 논란을 지적한 바 있음.
- 카드 조회, 승인, 매출액 정산 등에 대가로 카드사가 뱅사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되는 뱅 수수료 인하분에 대해서는 가맹점에 통지되지 않음으로써 수수료에 반영이 되지 않는 문제 발생

○ 국가 등이 카드수납을 강제에 따른 소상공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과중

□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방안

○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사업자의 뱅수수료 인하의 가맹점 수수료 즉각 반영 필요

- 3개 전환사업자의 평균 뱅 수수료는 45원으로 타 뱅사 평균 113원 대비 60%정도에 불과
- 3개 전환사업자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즉각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반영 필요 → 미반영 카드사의 공시 및 카드결제 거부 필요

○ 소상공인 전용뱅 또는 공공뱅 지정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 IC단말기 전환사업자 중 공공뱅 자격을 갖춘 뱅사를 공공뱅으로 지정하여, 현행 45원 수준의 수수료를 지속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수수료 인하
- 공공뱅 지정이 어려울 경우 소상공인 단체들과의 전략적 MOU 체결 등을 통해 기존 3개 전환사업자중 낮은 수수료제시뱅사에 소상공인 전용 뱅사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

○ **소상공인 단체에 가맹점 수수료 협상권 부여**

- 금융위는 협상권 부여에 있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나, 협상권은 배타성을 가지는 것으로 일정기준을 가지고 지정을 하면 문제될 것이 없음.
- 협상 주체인 가맹점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수료 협상을 진행하고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수수료 협상권이 필요

○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범위 확대**

- 2014년 통계청 도소매판매액 통계에 따르면 연매출 1억원 이하의 비중은 24.0%, 연매출 5억원 이하의 비중은 25.0%에 불과함.
- 따라서 영세가맹점을 연매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을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실질적 혜택을 확대할 필요

○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맹점, 소비자, 국가), 의무수납규제 폐지, 차별금지규제 폐지 등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재의 소상공인 등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비율이 과도한 측면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함**



## 지급결제수단간 경쟁 촉진해야

김 영 훈  
바른사회 경제실장

-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음. 정부 역시 그동안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영세자영업자 우대 이율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바 있음.
  - 2012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여전법은 대형가맹점과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차이를 줄이도록 하고, 수수료를 결정을 금융당국에게 사실상 위임함.
  - 여전법 개정안 통과 이후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중소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부분에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별도의 입법조치는 없었음.
  
- 카드 수수료율 결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카드 수수료 결정과정이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균형있는 협상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임. 현행 여전법은 카드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가맹점의 카드 수납거절 및 가격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하고 있는 현실임. 카드의무수납이 전제된 상황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이 균형있게 진행되기 어려움. 여기에 더해 대형 가맹점의 협상력, 우대수수료율 조치가 조합되면서 수수료율 결정에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임.
  - 대형 가맹점의 경우, 건당 매출액이 높고, 고객수를 기반으로 하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만큼 높은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음. 이용금액 기준, 상위 1,000개 (0.06%) 가맹점이 전체 취급고의 50.5%를 차지할 정도로 대형 가맹점의 취급고 집중도가 높음(2012.1월)<sup>1)</sup>
    - \* ①코스트코, 한 개 카드사와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낮은 수수료를 지급.
    - ②(2012.2)현대-기아차, 높은 내수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수수료를 인하여 성공. 반면, 타 자동차 업계는 실패함.
  -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넓힐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미봉책에 불

1)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개편 공청회(2012.4)

과함. 대형 가맹점의 경우 개별적 협상력, 영세 자영업의 경우 입법 조치에 따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의 근거가 취약하여 결국 일반 가맹점이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게 됨.

#### ■ 정부정책과 신용카드 시장의 확대

- 신용카드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급성장함. 1987년 신용카드업법 제정 이후, '97년 가격차별금지, 카드 결제거절금지(여전법 제정), 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신설, 2000년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2001년 신용카드 미가맹점에 대한 세무조사 등 강력한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이 확대되어 왔음.
- 신용카드 사용액이 1조원 늘어날 경우, 부가가치세는 777억원 증가함. 또한 신용카드 사용은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편차를 억제하여,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함.<sup>2)</sup>
- 최근 15년간(2002년~2016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사용된 조세지출은 19조 6469억원으로 연평균 1조 3천억원의 조세지원이 계속되고 있음. 정부의 조세지출은 2002년 6,223억에서 2016년(잠정) 1조9321억원으로 3배이상 증가함. 비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만의 영향은 아니지만, 한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46.8%에 달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당초 취지는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 자영업자의 세원을 노출시키기 위함임. 실제로 제도 시행이후 지하경제 규모(경상GDP 대비)가 23.7%에서 17.1%로 하락했다는 주장도 있음<sup>3)</sup>

#### ■ 대체결제수단의 확산

- 물론, (2005~2011년)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45.6%에 달하고<sup>4)</sup>, 고소득층의 현금사용선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다른 정책대안이 필요함. 국회 역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정책목적을 상당 부문 달성했다고 보고 있음<sup>5)</sup>.
- 국내 결제시장에서 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64%수준임.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그림1 참조). 여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존재함. 신용카드가 지급결제시장의 점유율이 낮은 중국이나 금융시장이 발달한 미국보다도 한국의 신용카드 시장이 확대된 것은 정책적인 지원에 기인함.

2) 신용카드 활성화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연구, 김상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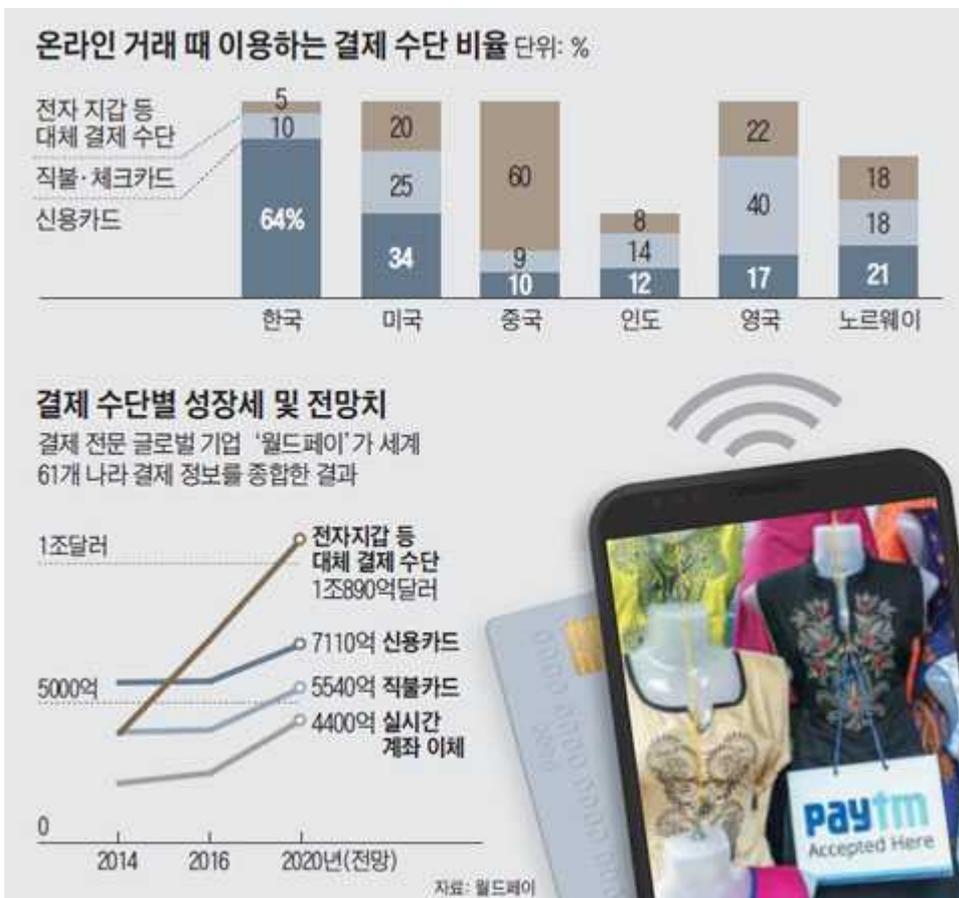
3) 박명호 · 우석진 · 빈기범(2010)

4) 오제세의원,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서」, p.10.

5) 2014년도조세지출예산서분석, 예정처, 2013.11)

- 신용카드는 마케팅, 해외브랜드 비용, 자금조달 비용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정부가 직접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를 우대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함.
- 따라서, 다양한 결제수단간 경쟁을 통해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최근 아프리카, 중국 등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는 물론, 선진국 역시 핀테크를 활용하는 지급결제시장이 확산되고 있음. 스웨덴의 경우 지폐없는 사회를 위해 국가적인 실험을 진행 중임.
- 기존의 신용·체크카드 결제 망을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을 중심으로 직(直)결제하는 '대체 결제 수단(alternative payment method·APM)'은 3년 전 5%수준에서 지난해 전 세계 결제 시장의 30%까지 증가함.

[그림1]



: (조선)모바일 시대에... 여전히 신용카드 굶는 한국, 2017.3.29

■ 지급결제수단간 경쟁 촉진해야 함

- 세원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가 카드 사용을 권장했듯이, 카드 사용은 과소비 문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음. 지금과 같이 가계부채 비중이 높고,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정책전환이 필요함.

- 탈세나 세원 잠식 상황이 우려된다면, 정부에서도 카드의무수납제를 폐지할 가능성은 낮음. 신용카드 의무수납을 폐지하는 것이 곧 현금 사용을 장려하는 것은 아님. 여전법을 개정해 신용카드가 아닌 다양한 결제수단 중에 수수료가 낮은 결제수단을 가맹점이 선택가능 하도록 해야 함.
- 현행 신용카드 시장은 가맹점이 아닌 회원확대를 위한 경쟁만 존재함.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케팅 비용 등은 사실상 가맹점에게 전가되고 있음.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이 카드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임.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서울시 중구 통일로 86 비비앙차 6층(순회동)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